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(차재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6-102
--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. 10. .

발의자 : 차재홍, 김영미, 김윤정,  
김효식, 문정애, 서종수,  
송병길, 이필례, 전승학

## 1. 제안이유

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5조)
- 나.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(안 제6조)
- 다.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(안 제7조)
- 라. 사업비 지원(안 제8조)

## 3. 관계법령

- 가.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## 4. 조례안 : 불임

5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## 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입법예고 : 2016. 10. 19. ~ 10. 24.(제출된 의견 없음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노인학대”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· 정신적 · 정서적 ·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, 「노인복지법」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, 시설종사자,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구민의 책무)** 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 · 시행)**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
2.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
3.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
4.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

**제6조(실태조사)**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**제7조(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)**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사업비의 지원)**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계 법령

## 노인복지법

[시행 2016.6.30.] [법률 제13646호, 2015.12.29., 일부개정]

**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15.6.4.] [법률 제12738호, 2014.6.3., 타법개정]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